

#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용석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46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20년 2월 19일

발 의 자 : 김용석·김제리·김화숙  
이현찬·채인묵·김 경  
정진술·봉양순·유 용  
이광호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공사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, 점용 공사의 점용 도로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 보완조치를 교통소통 대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## 2. 주요내용

가.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4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도로법 시행령」 별표2 제4호나목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
2.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           ① ~ ③ (생략)  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4조(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)           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 <u>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u>            1. 「도로교통법」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           2. 「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</p>